



# EU 에코라벨의 추진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 Trend of Eco-label in EU

윤 해 리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연구원  
김 익 / 스마트에코(주) 대표이사

### 1. 개요

현재, EU의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지원하는 도구들도 에코라벨과 연계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의 후속으로 2008년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산업정책을 위한 행동계획(Sustainable Consumption & Production and Sustainable Industrial Policy Action Plan)에서 에코라벨과 공공녹색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에너지관련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ErP) 규정 등과의 연계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92년부터 시행중인 EU 에코라벨에 대한 규제(Regulation)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9년 11월에 발표한 에코라벨 규제에 대한 개정판인 Regulation(EC) No 66/2010을 분석하고, 에코라벨과 EU의 다양

한 제품환경정책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여 EU 수출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 주요 내용

#### 2-1. 배경

현재, 소비와 생산구조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 아래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소비패턴의 변화의 일환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이후, 에코라벨은 2002년 Rio+10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마라케쉬선언을 통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단위에서 SCP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해 기존과는 달리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환경정책 흐름이 변모하면서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EU, 일본, 한국 등에서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법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 (EU) 2000년 에코라벨 규제(Regulation(EC) No 1980/2000) 제정에 따라 제품군의 환경영향 비교평가를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 2003년에 ‘기업 환경배려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여 공기업 등 독립행정법인에게는 환경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게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 (환경부) 2011년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녹색기업과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기업에 대해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ISO 14040 시리즈로 표준화된 에코라벨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절차와 요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지원하는 도구이다.

## 2-2. Regulation(EC) No 66/2010

### 2-2-1. 개요

EU 에코라벨에 대한 규제인 Regulation (EC) No 1980/2000의 개정으로 인증절차와 요건, 인증기관 요건, 수수료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대상범위 :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대상이며, 인간과 가축에 대한 의

료용제품은 대상에서 제외

### 2) 주요 내용

- EU 에코라벨은 선택적 라벨(Optional Label)

-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종 제품에 비해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능이 상위 2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함.

- 제품별 에코라벨 기준에 EU의 다른 제품 환경정책인 REACH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와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이행지침(Implementing Measure)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한편 제품별 기준 개발 시에도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에코라벨에서 개발된 인증기준과의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적인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 EU 에코라벨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인증수수료는 우리나라의 환경마크와 유사하게 신청료와 마크 사용료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기업들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2-2-2. 에코라벨 관련 기관

#### 1) 인증기관(Competent Bodies)

- 회원국별로 1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지정
- 독립성과 중립성, 투명한 절차를 요구
- 검증절차는 일관성, 중립성, 신뢰성이 있어야 함.



## 특 점

2) EU 에코라벨링 위원회(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 (EUEB))

국가별 인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 기준 개발 및 개정, 에코라벨제도의 검증 등의 역할을 하며 제도 운영 결과를 2015년 2월 19일까지 EU의회에 보고하여 라벨링 규제 개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2-2-3. 인증기준 요건

1) 고려사항 :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에 근거

- 일반적으로 동종제품 환경성능 상위 20% 이내에서 환경성능 기준을 설정

- 기후변화, 자원소비, 종다양성 등에 대한 영향

- 규제대상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 지속성과 재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효과

- 필요한 경우, 사회적/도덕적 측면을 고려

- 타 에코라벨 기준일 경우, ISO 14024에 제시된 기준개발 요건의 반영여부

- 추가적으로 전과정에 근거한 정량적 정보가 요구될 때는 ELCD(European Life Cycle Data Systems) 데이터를 활용

2) 음식류에 대한 기준개발 전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실행가능성 분석을 수행한 후에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기준에 반영

3) Regulation (EC) 1907/2006에 따른 REACH 등에 언급된 독성물질 등을 포함한 제품은 인증 제외

4) 에코라벨을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 제품군별로 요구되는 3가지 주요 환경특성정보를 제시

5) EUEB의 검토를 거친 후 9개월 이내에 관보를 통해 인증기준을 공개

6) 회원국의 에코라벨링 기준 : EN ISO 14024에 따라 엄격히 개발된 경우에는 EU 에코라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적용할 수 있음.

### 2-2-4. 수수료 부과

1) 신청료(Application fee) : 200~1,200유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함.

- 중견기업과 개도국의 기업의 수수료 최대 600 유로 미만, 소기업은 350 유로 미만으로 부과함.

- EMAS 또는 ISO 14001 인증을 받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청료를 20% 할인

2) 연간사용료(Annual fee) : 인증시점부터 1년간의 마크의 연간 사용료를 최대 1,500유로의 이내에서 부과함.

-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기업은 최대 750유로, 소기업은 최대 350 유로를 부과

### 2-2-5. 사후관리

인증기관은 마크의 부정사용 여부와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생산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부정사용 또는 인증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불시에 방문하여 적정사용 여부 또는 기준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그림 1] EU 에코라벨링 제품 사례



유성페인트(EU 에코라인)

두루마리 화장지(EU 에코라벨)

프린터(독일 블루엔젤)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해당기업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결과를 모든 인증기관과 감독기관에 통보
- 인증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돌려주지 않음.

### 2-3. EU 정책 및 에코라벨

#### 2-3-1. EU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정책과 에코라벨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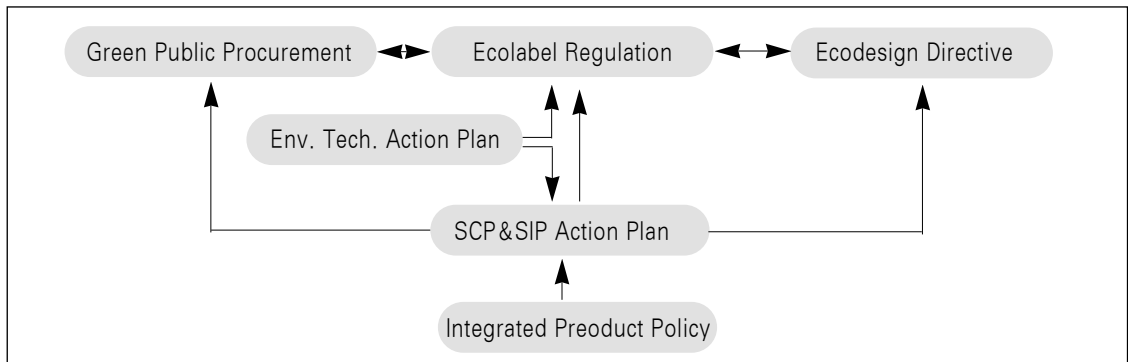
EU 에코라벨은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과 산업정책에 대한 행동계획(SCP&SIP Action Plan) 및 녹색공공조달(GPP), 에너지관련 제

품(Energy Related Product)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제, EU 환경기술 행동계획 등 다양한 정책 도구와 관련이 있다([그림 1] 참조).

최근에 기업 활동과 제품에 대한 환경성정보의 공개에 대한 요구의 확대로 ISO에서도 이에 대한 표준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4월 15일에 EU의회에서 “대기업의 비재무적 다양성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directive on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그림 2] EU 지속가능 소비생산 정책과 에코라벨간의 관계





# 특 점

[표 1] EU 지속가능 소비생산 지원도구들의 에코라벨 세부 요건

명칭	주요 내용
SCP & SIP 행동계획(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라벨 규정은 인증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하고 대상제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li> <li>· 에코라벨 기준은 에코디자인 요건이 아직 개발되지 않는 제품도 대상에 포함하며,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의 상위 10%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li> <li>· 에코라벨은 에코디자인 요건 개발을 위한 분석과정에 반영되며, 에코디자인 요건도 에코라벨 기준에 반영되도록 함</li> </ul>
공공녹색조달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의 공공녹색조달 기준은 EU 에코라벨과 에너지라벨, 제품별 에코디자인 요건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li> <li>· 제품별 공공녹색조달 기준 중에서 핵심기준(core criteria)은 에너지라벨 기준에 근거하고, 포괄기준(comprehensive criteria)은 에코라벨 기준에 근거</li> </ul>
에코디자인 규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에코라벨 요건에 따른 인증제품은 EU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른 기준이 있으면 이를 따른 것으로 인정</li> <li>· 적합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EU 에코라벨이 아닌 유사 에코라벨이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제시한 적합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EU 에코라벨의 요건을 따른 것으로 인정</li> </ul>
에코혁신 활동계획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혁신기술개발은 EU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li> <li>· 에너지라벨에 의한 에너지효율은 에코혁신기술의 성과목표 수립</li> </ul>

companies and groups)”이 통과되면서 환경성 정보를 포함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3-2. 정책도구별 에코라벨에 대한 요건

1) (SCP & SIP 행동계획) EU 에코라벨 규정에 제시된 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인증기준의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공공조달이나 에코디자인 규정과 연계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 (녹색공공조달 지침) EU의 공공기관들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매지침에서 에코라벨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 (ErP 지침) 에코디자인의 이행지침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호연계성이 매우 크다.

4) (에코혁신활동계획)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에코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지표로 에코라벨 기준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2-3-3. Ecolabel Work Plan 2011-2015

EU 에코라벨 위원회는 2010년에 발표된 EU 에코라벨 규정 개정판의 요건에 따라 EU 에코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에코라벨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25개의 제품군을 2015년에 40~50개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에코라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과 프로모션 전략 및 타 인증제도와의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 에코라벨의 5가지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

### 2-4. 에코라벨 관련 표준

#### 2-4-1. ISO 14000 시리즈 표준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ISO 14000s)의 개발을 관장하는 207번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산하에 있는 7개 분과위원회

[표 2] EU 에코라벨 5대 성장전략별 세부 내용

성장전략	주요 내용
정책개발 및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2014년까지 현행 에코라벨 규정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여 2015년 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li> <li>· 에코라벨을 EU의 지속가능 소비, 생산 정책에 포함된 녹색공공조달(GPP), 에코디자인 규정, EMAS등과 연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제시</li> <li>· 기준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해 EU 에코라벨 규정에서 충분히 언급하지 못함에 따라 주요 이슈별로 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원칙</li> <li>- 사회적 &amp; 윤리적 이슈에 대한 기준반영</li> <li>- 지속가능 산림관리에 대한 책임</li> <li>- GMO 등</li> </ul> </li> </ul>
기준개발 및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군 확대를 위해 당초에는 기준개발을 회원국의 인증기관에서 수행해 왔지만 이를 유럽 위원회와 해당 산업의 협회와 단체와 같은 이해당사자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말, 30개 제품군 중 25개 제품군의 총 37,215개의 제품이 인증</li> <li>- 개정대상 제품군 34개 중 개정 완료시점이 2014년~2016년에 들어있는 제품군은 18개이며, 주로 생필품과 가전제품 등이 주를 이룸</li> <li>- 2014년~2016년에 포함된 제정대상 제품군은 흡수성 위생용품과 청소서비스임.</li> </ul> </li> <li>· 이에 따라 2009년에 유럽위원회의 Joint Research Centre(JRC) 산하에 신제품청(new Product Bureau, PB)를 설치</li> <li>· 위원회는 회원국의 인증기관에 인증기준 개발비용을 제공하지 않음.</li> <li>· 모든 기준은 시효만료 2년 전까지 개정여부를 평가받아야 함.</li> <li>· 신규제안 제품군은 EU 에코라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다음의 요건을 검토한 후에 비포괄 목록*(non-exhaustive list)에 포함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개 중 가장 우선순위 목록으로는 자동차, 단일재를 포함한 건축자재, 전기통신서비스 등이 있음.</li> </ul> </li> <li>- 현행기준 존재여부, 산업계 요구, GPP와 조화, 시장규모, 에코디자인 요건과의 일관성, 제품별 환경영향 순위, 타 인증제도의 기준검토 등</li> </ul>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에코라벨의 성공은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달려있기 때문에 에코라벨 규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인증기관 포럼(Competent Body Forum)에서 마케팅 세션을 별도로 두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li> <li>·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2009년부터 영국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3단계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3년에 중단</li> <li>- 웹사이트와 E-카드로그, 언론홍보, 수상제도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li> </ul> </li> </ul>
타 제도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에코라벨 규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타 인증제도의 기준과 호환을 위해 ISO 14024의 요건을 따르는지에 대한 검증을 상시 검토</li> <li>· 2013년 11월에 EU는 Global Ecolabelling Network(GEN) 회의를 유치하여 타 제도와 상호인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N 산하에 국가간 상호인정을 다루는 GENICES(GEN's Internationally Coordinated Ecolabelling System)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li> </ul> </li> </ul>
제도운영 자금조달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수수료로 충당하는데, EU 에코라벨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덴마크의 인증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수료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4년에 최종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함.</li> <li>· 각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수수료는 기준개발 및 인증신청 접수 등의 행정처리, 사후관리 및 마케팅 등에 지출</li> </ul>



# 특 집

[표 3] 에코라벨 유형별 특징 비교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관련 ISO 표준	· ISO 14020 · ISO 14024	· ISO 14020 · ISO 14021	· ISO 14020 · ISO 14025
데이터 수집 범위 및 유형	· 제품 전과정 · 다중 환경정보 제시	· 제품 전과정 일부 · 특정 환경정보 제시	· 제품 전과정 · 다중 환경정보 제시
데이터 검증방식	· 제3자 이해관계자 검증	· 내/외부 전문가 검증	· 제3자 이해관계자 검증
선언방식	· 독립된 제3자 기관에서 선언	· 내부에서 직접 선언	· 독립된 제3자 기관에서 선언
표시방법	· 마크	· 마크 · 환경보고서	· 표나 그래프
결과의 의미	· 동종제품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성 우수	· 자사제품의 환경성이 우수	·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량적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특징	· EU 에코라벨이 대표적이며 공공 구매와 연계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유도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사에 대한 환경관리의 차원에서 자체 인증을 활발히 추진	· 스웨덴 EPD가 대표적이지만, 최근 EU에서 PEF 인증을 출범시켜 관심이 커지고 있음

(Sub-Committee, SC) 중에서 3번째 분과위원회(SC3)에서 에코라벨링에 대한 표준을 제·개정하고 있다.

에코라벨 표준은 라벨의 유형과 데이터 검증, 선언방식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2-4-2. ISO 국제 표준화 동향

2013년 4월에 EU가 제안한 제품과 조직에 대한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의 정보 공개시 사용할 환경지표를 에코라벨의 3가지 환경성능지표와 연계시킬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3가지 환경성능지표 산출과정에서 EU의 ELCD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발자국 산출을 위한 필수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정보는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필수정보로 제공되지만, 나머지 물발자국(Water Footprint), 자원발자국(Material Footprint), 부영양화

(Eutrophication) 등의 정보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다.

환경발자국에 대한 국제표준과 이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표준이 정식으로 제안되었고, ISO 집행부는 이를 채택함에 따라 2017년경에는 관련 표준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 산업영향과 대응방안

EU 수출기업에 있어 EU 에코라벨은 자발적 인증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환경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의 정책과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EU 에코라벨 획득에 필요한 인력투입 및 비용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인증획득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력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증을 취득한 후에 이를 토대로 EU 시장에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를 전시회 등을 활용한 홍보와 연계가 필요하다. 수출품이 EU의 에너지관련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적용이 되는 제품인 경우, 에코디자인 이행지침을 선제 대응한 후에 EU 에코라벨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며, 수출품이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REACH 등에 대한 대응 결과를 근거로 EU 에코라벨과 연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EU 에코라벨의 인증기준이 특정요소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제품 전과정에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라벨 인증제품별로 제시된 3가지 환경성능지표에 대한 환경발자국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에코라벨 인증취득을 추진하면 환경발자국 인증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기 발행된 환경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해외 바이어에게 우선 공개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대한 환경성정보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라벨 또는 환경발자국을 활용한 주력제품에 대한 환경성정보를 제공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 환경마크 인증 획득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는 일이 필요하다.

EU 에코라벨과 한국 환경마크의 상호인정이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인증 획득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원고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60-14-000” 가운데, 내용을 인용, 발췌했으며 지면상 EU 에코라벨링 인증받은 제품군수, 2014~2016년 개정 대상 제품군별 일정표는 생략했다. [K]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